

제2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(2022. 12. 19.)에서 의결된
무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
제32조 제6항에 따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월 11일

무안군의회 의장



김정현

무안군 조례 제2774호

붙임 : 무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무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무안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하며, 3년이 지나면 폐지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수는 사업 지속기간이 도달하기 전이나 3년에 도달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대상이 9개 읍면 전체가 아니거나 한 해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